

<붙임 1>

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주요내용

□ 시행일 : 2016. 7. 25 (공정위 고시 제2016-10호)

□ 주요 개정 내용

1. 과징금 부과율 상향 및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

개정내용	현행	개정안
과징금 기본금액 산정방식	하도급대금의 2배 × 부과율* * 3~10%	하도급대금의 2배 × 범위반금액 비율(15%) × 부과율* * 20~80%
<예시>	하도급금액 10억원 기준 - 과징금 : 6천만원 ~2억원	하도급금액 10억원 기준 - 과징금 : 6천만원 ~2.4억원
정액 과징금 부과금액	-	기술유용, 보복조치, 부당감액 등의 경우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(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)

* 부과율 : 범위반 유형, 피해유발 정도 등으로 위반 중대성을 구분하고 중대성 정도에 따라 20~80% 범위에서 결정

2. 과징금 가중·감경기준 축소

개정내용	현행	개정안
과징금 가중·경감 기준	최대 50%	최대 20%

3.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

- 위반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